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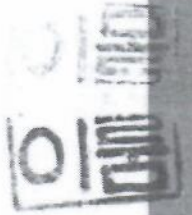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상대방 사이의 대전가정법원 2012호1405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2. 7. 31.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의무이행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월 500,000원에서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8. 12. 05.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 이혼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호1405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 7. 3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부 임성협은 모 윤주아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3. 양육비 심판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인 소득에 관하여

청구인은 위 이혼 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하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커 감에 따라 양육비가 늘어나자 귀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 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 및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월 급여 160 ~ 2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자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였고, 대출 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매월 417,931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사건본인의 교육환경

사건본인은 현재 대전중앙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고 있으나, 축구에 관심 및 재능이 있어 축구부 합숙소에 입단하여 교육을 받고 있어 매월 1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생활비 지출내역의 일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분류	세부내역	지출내역	합계 (단위:원)	근거
개인 회생	대전지방법원	2017개회1005698 개인회생	417,931	
대출	조이크레딧 대출상환금	대출상환금	370,098	
	차량할부금	월 평균 할부금	490,000	
보험료	윤주아 보험	월별 납입보험료	293,523	
	임진혁 보험	월별 납입보험료	126,864	
	의료보험	월별 납입보험료	60,000	
통신비	윤주아 통신비	월 평균 통신비	100,000	
	임진혁 통신비	월 평균 통신비	40,000	
	인터넷 등 사용료	월 평균 통신비	65,000	
기타 고정비	도시가스	월 평균 사용료	50,000	
	전기요금	월 평균 사용료	50,000	
	아파트 관리비	월 평균 사용료	50,000	
교육비	축구학습비	월 평균 학습비	300,000	
	축구학년회비	월 평균 납입 내역	70,000	
	숙소비	월 평균 납입 내역	350,000	
	개인레슨비	월 평균 납입 내역	300,000	
	의류비(축구관련 유니폼)	분기별 평균 (200,000원)	50,000	
	의류비	분기별 평균 (300,000원)	75,000	
적금	청약저축	월 평균 납입 내역	50,000	
생활비	생활비 (초등학교 교육비 포함)	현장학습,우유대금,방 과후학습, 재료비 등 월 평균 지출금액 포함	1,000,000	
합계			4,308,416	

이름



위 표는 식비, 부식비, 사건본인의 양육비 등이 전부 제외된 지출 내역이며, 청구인이 추산한 현재 실지출비용은 약 4,308,416원입니다.

다. 2인 가족 최저 생계비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1)에 따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의하여 2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1,795,188원[= 2,991,980원(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60%]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19. 8. 5. 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12-3357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4,96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9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청구인은 현재 보험관련 업무를 하며 월 160 ~ 2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나,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최저생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2018. 6. 7. [재판예규 제1693호, 시행 2018. 6. 13] 제7조(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②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4.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청구인의 양육비

2020. 11. 기준 사건본인 임진혁(2009. 2. 2.생, 남)는 만 11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2020. 11. 17. '2017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에 따른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부합산 소득 (세전)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799만 원	800~899만 원	900만 원 이상
자녀 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2세	532,000 279,000~592,000	653,000 593,000~735,000	818,000 736,000~883,000	948,000 884,000~1,026,000	1,105,000 1,027,000~1,199,000	1,294,000 1,120,000~1,341,000	1,388,000 1,342,000~1,487,000	1,587,000 1,486,000~1,670,000	1,753,000 이상
3~5세	546,000 223,000~539,000	732,000 640,000~814,000	896,000 815,000~944,000	1,053,000 975,000~1,121,000	1,189,000 1,022,000~1,284,000	1,379,000 1,285,000~1,477,000	1,576,000 1,478,000~1,654,000	1,732,000 1,655,000~1,828,000	1,924,000 이상
6~11세	623,000 244,000~699,000	776,000 700,000~864,000	952,000 865,000~1,044,000	1,136,000 1,045,000~1,219,000	1,302,000 1,220,000~1,408,000	1,514,000 1,409,000~1,559,000	1,605,000 1,560,000~1,717,000	1,830,000 1,718,000~1,997,000	2,164,000 이상
12~14세	629,000 246,000~701,000	774,000 702,000~884,000	995,000 885,000~1,107,000	1,220,000 1,008,000~1,303,000	1,386,000 1,304,000~1,484,000	1,582,000 1,485,000~1,650,000	1,718,000 1,651,000~1,797,000	1,876,000 1,798,000~2,143,000	2,411,000 이상
15~18세	678,000 260,000~813,000	948,000 814,000~1,076,000	1,205,000 1,077,000~1,290,000	1,376,000 1,291,000~1,483,000	1,610,000 1,494,000~1,715,000	1,821,000 1,715,000~1,895,000	1,970,000 1,895,000~2,047,000	2,124,000 2,048,000~2,394,000	2,664,000 이상

원: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상대방은 직장을 다니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합계(약 460 ~ 520만 원)와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참조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한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1,122,000 ~ 1,408,000원이며 그중에 상대방의 부담할 양육비는 약 86만 원 이상 됩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실질적인 소득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 청구부분을 변경 하겠습니다.

5.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 | | |
|-------------|---|--------------|
| 1. 갑제1호증 | | 주민등록등본 |
| 1. 갑제2호증 | | 혼인관계증명서 |
| 1. 갑제3호증의 1 | | 기본증명서(윤주아) |
| 1. | 2 | 가족관계증명서(윤주아) |
| 1. | 3 | 주민등록초본(윤주아) |
| 1. 갑제4호증의 1 | | 기본증명서(임진혁) |
| 1. | 2 | 가족관계증명서(임진혁) |
| 1. | 3 | 주민등록초본(임진혁) |
| 1. 갑제5호증 | | 재학증명서 |
| 1. 갑제6호증의 1 | | 양육비부담조서 |
| 1. | 2 | 송달증명원 |

